

교재 수정 부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40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선 노동조합전국평의회
80쪽 아래 3줄 ~ 81쪽 위 10줄	근로자의 인정 범위에서 논란이 아주 심한 것이 실업자와 구직자도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전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실업자와 구직자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¹⁾ 그러나 이 대법원의 판례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실업자나 구직자는 직장이 없어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²⁾ 위 대법원의 판결은 해고자를 노조에 계속 남겨두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사측과 갈등을 빚은 해고자를 노조에 계속 남아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또한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 라목에서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개념을 실업자나 해고자, 구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인정 범위에서 논란이 아주 심한 것이 실업자와 구직자도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전에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았으나,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 실업자와 구직자도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³⁾ 대법원 판례가 이처럼 변하는 이유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는 시각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동법 제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실업자나 구직자처럼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 대법원 판례가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되어 갔다. 즉, 현재 일을 하면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단결권 등 노동3권의 보장이 더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도 근로자로 보겠다는 쪽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래서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은 제외하고, 현재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하려는 사람이면 다 근로자로 보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법에서 보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근로자와 다르게 된다. 근로기준법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게끔 규율하는 것이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그런 사람만 근로자로 본다. 즉 실업자나 구직자는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한편, 이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노동조합법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는 동 법을 2021. 1. 5. 개정 (동년 7. 6. 시행)하면서 제2조 4항 라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를 실업자와 구직자, 해고자까지도 가능하게끔 근로자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제외하고는 일하고 있거나 일하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 대법원의 판례와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게 되는데, 실업자나 구직자는 직장이 없어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⁴⁾ 또한 그간의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법원의 판결과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 간 갈등으로 인한 해고자를 노조에 계속 남겨 두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노사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	--	--

워크북 수정 부분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33	(2강 6번 문제) 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로 명칭을 수정함.
	정답이 2번으로 나와 있음	정답을 3번으로 수정함 (전평은 좌익계열임)
70	(5강 2번 문제) 정답이 3번으로 나와 있음	4번도 정답에 추가함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면 다른 비대표노조를 교섭에 참여시키지 않아도 됨)

1) 대판(전합) 2015.6.25. 2007두4995; 대판 2016.11.10., 2015도7476)
2) 김형배, 박지순(2020), 노동법강의, p.35
3) 대판(전합) 2015.6.25. 2007두4995; 대판 2016.11.10., 2015도7476)
4) 김형배, 박지순(2020), 노동법강의, p.35